

2026년 법인세 신고 대비

세액공제·감면 제도 안내

 국세청 법인세과

CONTENTS

1 고용지원

2 투자촉진지원

3 중소기업지원

4 연구인력개발지원

5 기타지원



I

고용지원

01) 통합고용세액공제

0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01)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개요(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 고용과 관련된 분산된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

-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분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원		900만원		-	

* 청년(15세 ~ 34세), 노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 육아휴직 복귀자는 자녀 1명당 한 차례 한정

사후관리

-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 감소,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0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공제액)** ㉠ +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 20%(중견 10%)
 - ㉡ 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 20%(중견 10%)

 사후관리

- 추가공제 (㉡)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추가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0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개요(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감소한 경우

• **(공제액)** ㉠ + ㉡

㉠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 감소 총액 × 10%

㉡ 상시근로자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사후관리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II

투자촉진지원

01) 통합투자세액공제

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01)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개요

-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21년부터 시행
- '21.12.31.까지 투자완료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통합세액 공제 중 선택적용 가능

종전(자산별구분)

-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②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⑤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



개정(통합)

통합투자세액공제

- ① 공제대상 :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 ② 공제제외 : 중고품 및 임대용자산 제외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등

0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공제액)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규모별·항목별 공제율}
-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10%} [기본공제 2배 한도]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7)	10(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10
반도체기술	20	20	30	10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 '23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상이)

- (공제시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는 경우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제도개요

-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세액공제 배제

감면배제대상

<사업개시 시기 및 규모에 따른 증설·대체투자의 공제 여부>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¹⁾	대체투자 ²⁾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X (정보통신장비 0)	X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0)	0
중소기업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0)	0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0)	0

1) 증설투자 : 공장(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

2) 대체투자 :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

- 정보통신장비, 디지털방송장비,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시 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

Ⅲ

중소기업 지원

- 01) 중소기업의 범위
- 02)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제도
-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0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0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1) 중소기업의 범위

제도개요

조세특례
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
적용 가능

중소기업의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②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③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④ **졸업기준** : 위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유예제도

규모의 확대(매출초과)
or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 미 해당 시



해당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0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1,800억 원 이하

- 펄프, 종이 제조
- 1차 금속 제조
- 전기 장비 제조

1,500억 원 이하

- 의복, 모피 제조
- 가죽, 가방 제조
- 가구 제조

1,200억 원 이하

- 식료품 제조
- 화학제품 제조
- 기타 기계 제조
- 건설, 도소매업

1,00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운수, 창고
- 정보통신

80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의약품 제조
- 비금속 제조
- 의료, 광학기기

60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수리
- 보건, 사회복지
- 예술, 스포츠

4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
- 부동산업

02)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공제·감면제도 요약

규정	조특법	특례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6	소재지 · 업종 · 사업자별 50~100% 감면을 차등
위기지역창업 감면	§ 99의9	최초 5년 100%감면 적용 후 그다음 2년 5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7	규모 · 소재지 · 업종별 5~30% 감면을 차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7의4	결제일별 0.5%~0.15% 공제율 차등
통합투자세액공제	§ 24	규모 · 투자대상 자산별 1%~30% 기본공제 및 10% 추가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 29의8	규모 · 소재지 · 상시근로자별 400만원~1,550만원 공제액 차등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의2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을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을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02)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공제·감면제도(요건)

규정	조특법	요건			사후관리	농특세	최저한세
		규모	소재지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6	○	○	○	○	비과세	적용 (추가 및 소규모창업 적용제외)
위기지역창업 감면	§ 99의9	x	○	○	○	비과세	100%감면분 제외 50%감면분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7	○	○	○	x	비과세	적용대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7의4	○	x	○	x	과세	적용대상
통합투자 세액공제	§ 24	x	○	○	○	과세	적용대상
통합고용 세액공제	§ 29의8	x	x	○	○	과세	적용대상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 63의2	x	○	○	○	비과세	적용제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 63	x	○	○	○	비과세	적용제외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이전 적용)

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구분	제조업 등		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등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중기업	-	15%	-	5%	-	7.5%
소기업	20%	30%	10%	10%	10%	15%

* (감면한도) 1억원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5백만원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0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
 - ① 창업중소기업(청년 · 소규모 창업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 (감면액)**
 - ① **(기본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 ② **(추가감면)** 산출세액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 50% (청년, 소규모 제외)

구분	일반 창업	청년 · 소규모 창업	벤처 ·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5년)	50%(5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5년)	100%(5년)	50%(5년)	50%(5년)

사후관리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이전 과세연도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0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 하는 제도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15일 이내	16일 ~ 30일	31일 ~ 60일
공제율	0.5%	0.3%	0.15%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IV

연구·인력개발 지원

- 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0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0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연구·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비용 ×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 (선택)	당기분	25%	~3년차 20%, ~5년차 15%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3년차 25%	20%~30%	20%~30%
국가전략기술('21.7월 지출분부터)		40%~50%	~3년차 35%	30%~40%	30%~40%

사후관리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연구개발(창작) 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또는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세액공제 배제

0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 ②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③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닐 것
- (공제액)** 지급한 경영성과급 × 다음의 공제율

구분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공제율	10%

-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 제외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0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 ① 출자대상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 ② 출자방법 : 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
- **(공제액)** 출자지분 취득가액 × **5%**

구분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
공제율	5%

* 제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관리

-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V

기타지원

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0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04)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0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개요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 ①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의 전부이전
 -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분	이전 후 소재지	100% 감면	50% 감면
중소기업	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단, 본사가과밀억제권역내 있는 경우 본사도 이전)	초반 5년	이후 2년
중소기업 및 그 외 기업	②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내 산업단지(중소기업은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도시	초반 5년	이후 2년
	③ 지방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성장촉진지역 등	초반 7년	이후 3년
	④ ①,②,③ 외의 지역	초반 7년	이후 3년
	⑤ ①,②,③ 외의 지역 중 성장촉진지역 등	초반 10년	이후 2년

사후관리

- 이전 후 ① 3년 이내 폐업 · 해산시, ② 사업 미개시, ③ 수도권에 동일한 공장을 설치 ➡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추가납부

0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제도개요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100%
그 다음 2년간	50%	50%
감면 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

사후관리

-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0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

*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 소상공인, 임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 제외, 임대인과 비특수관계자

- **(공제액)**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인하액* × 공제율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에서 실제로 차감한 임대료 금액

구분	법인
공제율	70%(5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원 초과시 50% 적용

사후관리

-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대비 임대료 ·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 ① 인하한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인하한 다음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04)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개요

- 위기지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세액감면 적용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또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감면대상업종* 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법인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18개)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그 다음 2년간
감면율	100%	50%

- * 감면한도(중소기업 외 적용) : (가) + (나)
 (가) 감면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액 ×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및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천만원)

사후관리

- 감면대상 과세연도 후 2년내에 감면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중소기업은 사후관리 제외)
 - ▶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감소인원에 1천5백만원(청년 등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 지역 이전하는 경우
 - ▶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

0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용역제공자¹⁾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²⁾ 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손택스)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
 - 1)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9개 업종
 - 2)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공제액)**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한도 200만원, 최소 1만원)
- **(적용기한)** '26.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

참고자료

- 1 상시근로자 개념 및 제외대상 등
- 2 최저한세 개념 및 계산방식 등
- 3 농어촌특별세 개념 및 계산방법 등
- 4 세액공제 ·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01.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개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
-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등 미납자
- ⑦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

* 급여액 기준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각 조문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확인 필요)

-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 $\sum(\text{과세연도 근무 개월 수} \div \text{과세연도 개월 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6.2월 시행령 개정 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

※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창업한 경우 : 0
- 합병 · 분할 · 사업양수 등인 경우 : 기존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제도 개념

조세감면(공제, 감면, 비과세 등 포함)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계산방식(다음 중 큰 금액)

- 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
-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기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세율

중소기업			그 외		
일반	유예기간		과표 100억원 이하	과표 1,000억원 이하	과표 1,000억원 초과
	1~3년	4~5년			
7%	8%	9%	10%	12%	17%

※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감면 배제 순서
 - 신고 : 납세자 자진 선택
 - 경정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 · 비과세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최저한세 적용대상 주요 세액공제 · 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1	세액 공제	§ 7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3	세액 공제	§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		§ 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4		§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 10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15		§ 32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4		§ 12②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	세액 감면	§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00% 감면 외)
5		§ 12의4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7		§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6		§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		§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감면)
7		§ 19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9		§ 31④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8		§ 24	통합투자세액공제	20		§ 32④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9		§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1		§ 63	공장의 수도권 안(과밀억제권역 제외) 이전 감면(중소기업)
10		§ 25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22		§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		§ 26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23		§ 96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		§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4		§ 99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50% 감면)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세액공제 · 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세감면제도
1	세액 공제	§ 10	R&D 세액공제(중소기업)	14	세액 감면	§ 85의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2		§ 96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5		§ 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100% 감면)
3		§ 100의18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	16		§ 99의11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4		§ 104의32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7		§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5		§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		§ 121의2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6	세액 감면	§ 6①,⑥,⑦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00% 감면), 추가감면	19		§ 121의2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7		§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20		§ 121의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8		§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21		§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100% 감면)
9		§ 63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2		§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100% 감면)
10		§ 63의2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3		§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창업기업 감면(100% 감면)
11		§ 68	농업회사법인 감면(작물재배업소득)	24		§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12		§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25		§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100% 감면)

0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



농어촌특별세 개념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목적으로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목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 으로 인한 감면세액에 20%

* 비과세소득, 세액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농특세법 제4조 및 동령 제4조)

순번	조특법 조항	공제·감면 항목	순번	조특법 조항	공제·감면 항목
1	§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 63,64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 7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 66, 67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3	§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	§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4	§ 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 99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 104의8	전자신고세액공제
6	§ 30의3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04. 세액공제 ·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중복적용 배제 개념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기 위해 한 과세기간에 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제한



동일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선택하여 공제 가능 § 127조②)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vs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동일 과세연도에 주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상호 중복적용을 배제

순번	조특법 조항	세액감면 제도	순번	조특법 조항	세액공제 제도
1	§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 8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2	§ 7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 63①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 24	통합투자세액공제
4	§ 63의2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5	§ 85의6	사회적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5	§ 104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	§ 99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	§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감사합니다